

매각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매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라 함은 발주자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인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지정된 반출장소에서 매각물품을 넘겨받아 발주자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매각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물품인수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8조(계약체결, 대금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인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의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물품 인도인수 및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상·하차비, 운반비, 계량수수료 등 제반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과정 등 계약이행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반출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반출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책임으로 물품 인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1에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반출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 연기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필요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기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반출기한(또는 연장된 반출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물품의 반출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출기한 내에 반출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인수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 인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7조(사고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반출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물품의 반출) 계약상대자는 물품 반출 전까지 반출담당자와 반출작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매각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단,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발주자가 속한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제30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